

2023학년도 2학기

대학원 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(대체)연구계획서 입력·승인 안내

1. 지도교수 배정

가. 입력기간: 2023. 9. 12.(화) ~ 10. 4.(수)까지[학과장(전공주임)이 배정]

나. 배정대상: 제2차 학기 재학생 또는 제2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않은 재학생 및 수료자

- ▷ 대학원 입학 두 번째(편입생은 첫 번째) 학기 재학생
- ▷ 두 번째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않은 재학생 및 수료자
- ▷ 학위청구논문(대체)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수료자 배정대상(지도교수가 기 배정된 학생 제외)

다. 배정방법

- 1) 지도교수는 소속학과(전공)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이 배정하며, 학과(전공)사무실에서 배정·입력
 - 2)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(전공)사무실에 연락하여 요청
 - 3)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를 지도교수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: 첨부파일 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(전공)사무실에 제출
 - 4) 지도교수 배정 확인: 2023. 10. 10.(화)부터
 - 샘플포털시스템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학적정보→개인정보수정→지도교수란에서 확인·출력 지도교수 성명 확인
- ※ 지도교수란이 공백으로 확인·출력되는 경우 학과(전공)사무실에 연락하여 배정 요청

2. 논문(대체)연구계획서 입력 지도(반드시 입력 요청)

가. 입력기간: 2023. 10. 4.(수) ~ 31.(화) [기간종료 후에도 수시 변경 가능함]

나. 지도대상: 이번학기 및 기존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모든 대학원생

다. 입력경로: 샘플포털시스템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→졸업→논문(대체)계획서 등록/변경에서

- ① "신규"버튼을 클릭, ②구분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(부제 입력은 선택사항), 연구목적과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간략히 입력한 후 ③ "등록"버튼을 클릭

논문(대체)계획서 등록/변경(학생용) X

조회

학번/성명

학번	성명	성별	학기	이수학기	과정명	2년공	3년공	4년공
과장구분	일반학생	본교생(선사)	소속			연계1	연계2	가속속
학위상태	재학	입학구분	신입학	국적	대한민국	졸업1	졸업2	심화전공이수
최종변동	재입학일	전형	정원내_사외(일반)	E-mail	부전공1	부전공2	교과이수	N
지도교수	휴대전화				교원/교류			

논문(대체) 연구보고서, 작품발표, 학점추가(미수)계획서 등록/변경

신성년도 * 2020 신성학기 * 2학기 승인상태 변경

변경 전

변경 후

② 구분 선택

제목 국 영

부제 국 영

연구목적

연구방법

① ③

논문(대체)계획서 등록/변경

※논문(대체)계획서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: '신규'버튼을 클릭하고 '구분'에서 해당하는 논문(대체)방법을 선택, 제목, 연구목적, 연구방법, 연구내용을 입력한 후 '등록'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.

※입력한 내용에 오차가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: 우측 화면 '등록/변경'이력에서 등록상태를 확인했을 때 '지도교수 승인'과 '학과장 승인'이 아직 공백이라면 '취소'버튼을 클릭이 가능하므로 '취소'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합니다.

※입력한 제목, 부제, 연구목적, 연구방법, 연구내용 등 변경: '신규'버튼을 클릭하면 변경 후 제목, 부제, 연구목적, 연구방법, 연구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됨. 활성화 된 입력란에 내용을 입력 또는 수정한 후 '변경'버튼을 클릭하면 저장됩니다.

변경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승인 및 변경은 본인 졸업식일지 2주전까지 취소 제한없이 여러번 신청가능합니다.

단, 변경 승인받은 동일일지에는 변경신청 추가가 불가능하나, 다음날 변경 신청해주시요

※논문(대체)계획서 내용을 최초 등록하거나 변경한 후, 지도교수와 학과장(전공주임)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
▷지도교수 승인경로: 지도교수님이 직접 샘플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교수학사→졸업→논문(대체)계획서 승인(대학원)

▷학과장(전공주임) 승인경로: 학과장(전공주임)이 직접 샘플시스템 로그인→통합정보→학사→졸업→논문(대체)계획서→논문(대체)계획서 승인 화면입력 및 승인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문의처: 02-781-7709(샘플시스템 사원수행팀)

문의처 관련링크: <https://www.smu.ac.kr/oupage/notice/notice.do?mode=view&articleNo=705245>

※승인받은 이후 출력 또는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. (출력&제출하지 않습니다.)

※ 논문(대체)연구계획서 "구분"선택 가능범위

[소속학과(전공)에서 승인하지 않는 범위의 구분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으로 "졸업논문"으로 변경함]

- ▶ 일반대학원: www.smu.ac.kr/grad/thesis/substitution.do#tab6882
- ▶ 교육대학원: www.smu.ac.kr/edu/exam/thesis05.do#tab6847

- ▶상담대학원: www.smu.ac.kr/wac/exam/thesis05.do#tab6717
- ▶경영대학원: www.smu.ac.kr/mft/exam/paper05.do#tab6497
- ▶문화기술대학원: www.smu.ac.kr/gsct/thesis/thesis05.do#tab6410

라.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기에는 향후 학위청구(졸업) 및 관련 규정[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1조(연구계획서)]에 의거하여 반드시 **논문(대체)연구계획서**를 입력.

3.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(신청기간 제한 없음)

지도교수 배정상태	변경희망	신청구분	신청절차
A교수	A교수→B교수	1대1변경	대학원생이 샘물포털시스템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 →졸업→논문(대체)지도교수변경요청에서 직접 신청하고 변경원을 출력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C교수, B교수	1대1변경	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C교수, D교수	1대1변경	
A교수	A교수→A교수, B교수	1대2변경	첨부파일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을 작성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B교수	2대1변경	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A교수	2대1변경	

4. 관련 규정

가. 대학원 학칙

제33조(지도교수)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, 강사,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,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

③지도교수는 적정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전공변경, 지도교수의 유고 및 논문주제의 변경 등 지도교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운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만약,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나.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제41조(연구계획서) ①학위청구자는 제2차 학기 내지 제3차 학기에 연구계획서(논문, 작품발표, 연구보고서 등) 또는 학점추가이수 계획서를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도교수와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.

제42조(지도교수) ①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대상자별 지도교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2인의 교수가 공동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학칙 제33조 1항 및 2항을 따른다.

③현재의 지도교수가 동의할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지도교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④지도교수는 석사과정,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2개학기, 통합과정은 3개학기 논문(작품, 연구보고서)지도를 하여야 한다. 단, 학점추가 이수자는 예외로 한다.

다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10.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·논문심사·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- 붙임 1. 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 1부.
2.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 1부.
3. 대학원 학과(전공)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. 끝.

2023. 8.

대학원장
교육대학원장
통합심리치료대학원장
경영대학원장
문화기술대학원장